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학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학술진흥법」 일부 개정(법률 제17669호, 2020.12.22. 공포)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‘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’를 규정하고(안 제15조 신설),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·감독의 법률적 근거(안 15조의2 개정, 제15조의3 신설)를 마련하는 한편, 법률에서 정한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방법을 구체화(안 제17조 개정, 제17조의2 신설)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연구부정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규정 신설(안 제15조 신설)
- 나.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·감독의 법률적 근거 마련(안 15조의2 개정)
- 다. 연구윤리 실태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(안 제15조의3 신설)
- 라.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방법의 구체화(안 제17조 개정, 제17조의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3. ~ 12. 13.) 예정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5조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15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15조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대학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(연구부정행위의 종류)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’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복게재 행위
2.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3. 그 외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

제15조의3(연구윤리 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

리규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대학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,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④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나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, 공개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5조제2항”을 “법 제1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대학등의 조치) 대학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조치)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은 제15조의2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·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,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(연구부정행위의 종류) 법</u> <u>제15조제1항제2호에서 ‘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하는 행위’는 다음 각</u> <u>호와 같다.</u> <u>1.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</u> <u>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</u> <u>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</u> <u>한 후 부당한 이득을 얻는 중</u> <u>복게재 행위</u> <u>2.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</u> <u>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</u> <u>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</u> <u>를 가하는 행위</u> <u>3. 그 외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</u> <u>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</u> <u>하게 벗어나는 행위</u>
<u>제15조(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)</u>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<u>법 제15조제1</u> <u>항에</u>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 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1. ~ 6. (생략)	<u>제15조의2(연구윤리지침의 작성</u> <u>등) ① -----</u> <u>----- 법 제15조제2항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</u>. 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6조(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)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대학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5조의3(연구윤리 실태조사) ①

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대학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,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④ 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나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, 공개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제16조(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) ----- 법 제15조제3항-----

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17조(대학등의 조치)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·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,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.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대학등의 조치) 대학등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의 조치) 사업비를 받은 대학등은 제15조의2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·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,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학술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55